

## **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**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」 제4조제5호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고시에서 "무등록 소상공인"이라 함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말한다.

**제3조(금전채무)**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」 제4조제5호에 따른 금전채무는 무등록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·급부(給付)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.

**제4조(사업사실 확인)** 무등록 소상공인은 별지 서식의 확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자(이하 "사업사실 확인자"라 함)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발급하는 확인(증명)서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써 사업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.

**제5조(사업사실 확인자)**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장(지점장 등), 사업장소재지 통(이)·반장, 인근 고정사업주, 아파트부녀회장, 아파트관리사무소장, 상인회장 등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신청을 희망하는 무등록 소상공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

아니한 제3자는 사업사실 확인자가 될 수 있다.

**제6조(유효기간)**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.

**제7조(재검토기한)**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**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-50호 「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」은 폐지한다.

**제3조(다른 고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 당시 「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」 의해 확인된 무등록 소상공인은 이 고시에 따라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본다.

<별지>

##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

### 1. 신청인(본인작성)

상호명 (*해당자에 한함)		사업자명		주민등록번호	-
주 소				전화번호	
				휴대폰 번호	
상시근로자수 (*해당자에 한함)	명	업종(취급품목)	( )		
사업장소재지 (구체적으로)					
개인정보 취급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※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				

### 2. 사업사실 확인(확인자 작성)

상기인이 위의 장소에서 실제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					
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연락처(전화)	서명	
직장명(직위) (*해당자에 한함)		직장주소 (*해당자에 한함)			
※ 사업사실 확인자 - 시장상인 : 상인회장 - 노상점포 : 사업장 소재지 통·반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, 부녀회장,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*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,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(유제품 배달원 등) 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					
개인정보 취급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※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				

\* 보증 신청시 제출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.